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9. 8.

발 의 자 : 이갑선 · 박세채 · 윤서규
한정우 · 구자근 · 허 복
김태근 · 우진석 · 김도문
김영호 · 석호진 (11인)

1. 제안이유

-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지원의 제한 규정 마련
(안 제3조, 안 제4조)
-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 구매활동 · 기술력 향상 ·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을 천명함
(안 제5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우대의무에 따라 여성기업 자금지원 우대를 규정함(안 제6조)
-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배려를 규정함(안 제7조)

-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 경제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구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구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고시에 따른다.

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한 기업

3.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5.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9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 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국장, 계약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여성기업 대표
4.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5. 구미시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6.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유공자 포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법 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명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이 창 선	이 창 선	
허 복	허 복	
김도원	김도원	
구 작 근	구 작 근	
윤 사 기	윤 사 기	
한 정 우	한 정 우	
김 영 조	김 영 조	
김 재 근	김 재 근	
이 지	이 지	
박 세 해	박 세 해	
이 지	이 지	